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의 안 번 호	

제안연월일 : 2026. 3. .
제 안 자 : 성평등가족위원장

1. 대안의 제안경위

가. 심사경과

의안명	의안번호	대표발의자	발의일자	심사경과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13633	이인선 의원	2025.10.17.	○ 제432회국회(임시회) 제1차 전체회의(2026. 2. 5.) 상정・제안설명・검토보고・대체토론 및 소위회부 ○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3.17.)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16085	이연희 의원	2026. 1.16.	○ 「국회법」 제58조제4항에 따라 법안심사소위원회 직접 회부(2026. 3.16) ○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2026. 3.17.) 상정・심사・의결(대안반영폐기)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2216390	민형배 의원	2026. 1.28.	

나.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17.)는 위 3건의 법률안을 심사한 결과,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이를 통합・조정하여 위원회 대안으로 제안하기로 함.

다. 제433회국회(임시회) 제1차 성평등가족위원회(2026. 3. 24.)는 법안

심사소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3건의 법률안을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하고,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2. 대안의 제안이유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여 한부모가족의 소득수준과 관계 없이 양육비 선지급이 가능하도록 하고, 소액의 양육비만 이행받았음에도 선지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하려는 것임.

한편, 소득요건 삭제와 소득요건 확인을 위한 소득관련 조사 규정을 삭제하여 부정수급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 관련 조사가 불가능하게 됨에 따라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3. 대안의 주요내용

가.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양육비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요건을 일정 기간 또는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이 양육비 선지급 금액 미만인 경우로 변경함(안 제21조의6제1항제1호).

나. 양육비 선지급 요건 중 소득요건을 삭제하고, 이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제21조의6제1항제2호 및 제21조의12

삭제, 안 제21조의11제1항ㆍ제2항ㆍ제5항 등).

다. 소득요건 삭제와 그에 따른 소득요건 조사 관련 규정의 정비에 따라 부정 지급된 양육비 선지급금 반환을 위한 소득ㆍ재산 조사 및 관련 자료 협조 요청 근거를 규정함(안 제21조의11제3항ㆍ제6항ㆍ제7항 신설).

법률 제 호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6제1항제1호 중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를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및 같은 조 제2항을 각각 삭제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선지급 신청인이”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로 한다.

제21조의7제1항 단서 중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로 한다.

제21조의8제2항제2호 중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을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으로 한다.

제21조의11제1항 중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재산”을 “신청인에게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그 밖의 가족관계”로,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를 “생활환경”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의 변동 여부”를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로 하며, 같은 항 후단 중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를 “관련 자료”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을 제8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4항 및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종전의 제3항) 중 “제1항 및 제2항”을 “제1항에서 제3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종전의 제4항) 전단 중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을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출입국·병무·교정”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6항 및 제7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대상자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소득·재산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21조의12를 삭제한다.

제27조제1항 중 “제17조제6항(제21조의1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제17조제6항”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6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양육비 선지급 신청에 관한 적용례) 제21조의6제1항 및 제21조의11제1항·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제21조의7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양육비 채권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이행관리원의 장에게 양육비 채무자를 대신하여 양육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먼저 지급(이하 "양육비 선지급"이라 한다)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1. 양육비를 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는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또는 횟수 이상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2. 양육비 채권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소득인정액을 말한다. 이	제21조의6(양육비 선지급 신청) ① ----------. 1. ----------횟수에 이행한 평균 양육비 금액(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기로 한 주기가 월 단위가 아닌 경우 월 단위로 환산한 금액을 말한다)이 제21조의7제1항에 따른 양육비 선지급의 금액 미만인 경우 <삭 제>

하 같다)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150 이하인 경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는 양육비 선지급에 필요한 범위에서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에 대하여 금융정보등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삭 제>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이 제21조의11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양육비 선지급을 거절할 수 있다.	③ ----------양육비 선지급을 신청하는 자(이하 “선지급 신청인”이라 한다)가----------.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제21조의7(양육비 선지급의 결정)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6제1항에 따라 양육비 선지급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① ----------

이내에 양육비 선지급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또는 제21조의12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에 시일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기한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 -------제21조의11에 따른 조사----------.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21조의8(양육비 선지급 결정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양육비 선지급을 중지할 수 있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양육비 채무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거나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제21조의6제1항제2호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하는 등 양육비 선지급의 사유가 상실된 경우	2. ----------양육비 채무를 이행하는----------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신청인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생활환경 및 소득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1조의11(양육비 선지급을 위한 조사) ① ----------신청인에게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나 그 밖의 가족관계----------생활환경----------.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 대하여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양육비 채무자의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선지급 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재산의 변동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다. 이 경우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 요구 및 조사, 관계인에 대한 질문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② ----------양육비 채무 이행 여부----------. ----------관련 자료----------.

<신 설>	③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21조의9제2항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양육비 선지급금 등을 징수하기 위하여 선지급 대상자에게 소득·재산 등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 직원으로 하여금 선지급 대상자의 주거 또는 그 밖의 장소에 출입하여 소득·재산 자료 등을 조사하게 하거나 관계인에게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사·질문을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④ 제1항에서 제3항까지----------.
④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선지급 신청인 또는 선지급 대상자에 대한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 금융·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	⑤ ----------주민등록전산정보·가족관계등록전산정보·출입국·병무·교정----------

·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보훈급여·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 중앙행정기관, 법원행정처, 지방자치단체 및 그 밖에 관련 기관·단체의 장(이하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이라 한다)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 ----------.
<신 설>	⑥ 이행관리원의 장은 제3항에 따라 강제징수를 위한 소득·재산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주민등록전산정보, 국세·지방세, 토지·건물,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업재해보상보험, 출입국·병무·교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련 전산망 또는 자료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관계 중앙행정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 설>	⑦ 제6항에 따라 자료를 제공받은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에게 그 제공받은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⑤ (생 략)	⑧ (현행 제5항과 같음)
제21조의12(선지급 신청인 등의 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신청인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발생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선지급 신청인과 그 가구원이 제21조의6제2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삭 제>
② 이행관리원의 장은 선지급	

대상자의 양육비 선지급 사유의 변경 또는 상실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적사항을 적은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금융기관등의 장에게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요청과 관련하여 금융정보등의 제공,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에 대한 명의인 통보 등은 제17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준용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6항(제21조의1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사용·제공 또는 누설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27조(벌칙) ① 제17조제6항----------.

②·③ (생　략)	②·③ (현행과 같음)